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78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정춘생·김준형·서왕진

조 국・이해민・황운하

박은정 · 김재원 · 김선민

차규근 • 신장식 • 강경숙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. 국회의원 정원대비 약 6.7%에 해당하는 비율임.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. 실제로독일 하원은 5% 이상, 캐나다 12명, 스위스 5명, 일본 2명 등 대체로의원정수의  $0.4\sim5\%$ 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.

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,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.

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,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20명"을 각각 "10명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교섭단체) ① 국회에 <u>20명</u>	제33조(교섭단체) ①10명
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	
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	
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	
니하는 <u>20명</u> 이상의 의원으로	<u>10명</u>
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	
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